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424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1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04.13.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11. 5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이택권	전부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2019.03.22.-	215,000,000		2019.03.25.	2019.03.12.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19.03.22.-	215,000,000		2019.03.25.	2019.03.12.	2025.8.18.	
<비고>										
이택권: 경매신청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임차인 이택권으로부터 우선매수권리를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. 2. 12.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함(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5조 제2항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424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8-1

성도리치빌

다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82번길 47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6층 다세대주택(단지형다세대주택) 및

1.2종근린생활시설

1층 99.78㎡

1층 51.58㎡

1층 17.14㎡

2층 192.75㎡

3층 146.25㎡

4층 146.25㎡

5층 146.25㎡

6층 123.81㎡

옥탑1층 17.6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42.7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8-1
대 1043.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,043.2분의 26.0831

감정평가액

224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3.19

224,000,000

22,400,000

2회

2026.04.23

156,800,000

15,680,000

3회

2026.06.04

109,760,000

10,976,000

4회

2026.07.09

76,832,000

7,683,200

임차인 이택권으로부터 우선매수권리를 양도받은 한
국토지주택공사가 2026. 2. 12.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
함(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5조

제2항